#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**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0월  9일 부천시장 제출**

**나. 회부일자 : 2007년 10월  10일**

**다. 상정 및 의결일자**

○ 제13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7년 10월 18일) 상정・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로과장 배치열)

### □ 제안이유

○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○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.(안 별표 1)

- 전주, 수도관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, 주유소,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, 전주, 수도관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함.

## 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| 질 의 | 답 변 |
|---|---|
| ○부천시의 공시지가는 93년 이후 200% ~ 300%가 인상되었는데 점용료는 약 %가 인상되었는가? | ○도로점용료는 93년 개정이후 약 37% 정도 인상되었음. |
| ○도로 점용료가 인상되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? | ○93년 이후 우리시는 한번도 점용료를 인상하지 않았음 이번 개정안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상하여 서민경제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 |
| ○공시지가는 많이 인상되었으나 점용료는 소폭 인상되는 점이 있는데 이에 시의 대책은? | ○금번 인상 및 조정사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, 도로점용료는 1년에 한번 그대로 부과 되며 대부분 전신주, 하수관, 전화부수 등 공익적인 사업이 대부분으로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산정함. |
| ○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가 많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? | ○관련부서 건축과 및 도로과, 수도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 하겠음. |
| ○공사시 도로주변에 무단적치물을 야적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 도로점용 허가시 현황판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 시민들이 신고하도록 조치요망. | ○대형공사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사장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어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조치하겠음. |

## 4. 토론요지

**가. 찬성토론 : 없 음**

**나. 반대토론 : 없 음**

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 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#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 번 호 | 제165호 |
|---|---|
| 의 결 년월일 | 2007. 10. 26 (제139회) |

제출년월일 : 2007. 10. 9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○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○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.(안 별표 1)

- 전주, 수도관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, 주유소,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, 전주, 수도관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함.

#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제24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4조에 따라“로 하고, “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0조의2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별표 1“의 기준에 의하여”를 “별표 1에 따라”로 하고, “산정기준에 의하되”를 “산정기준에 따르되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3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5,000원미만”을 “5천원 미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7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75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점용료중”을 “점용료 중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연도”로 하며, ““별표 2””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”를 “별표 2”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제5호 중 “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으로 하고, “6조의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비·햇빛가리개 시설”을 “제20조의 공동시설로 비가리개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

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다음 각호에 의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에 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제2항의 규정”을 “제2항”으로 하며, ““별표 1””을 “별표 1”로 하고, “다음 각호에 의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에 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건설표준품셈에 의한”을 “건설표준품셈에 따라”으로 하고, “범위안”을 “범위 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 내지 제3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3조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납입고지서(별표서식)”을 “별지 서식의 납입고지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“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다음 각 호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3월이내”를 “3개월 이내”로 하며, 제3호 중 “1월 이내”를 “1개월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“각호의 규정에”을 “각 호에도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강제징수에 관하여”를 “강제징수는”으로 하고, “예에 의한다”를 “예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77조의2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감면에 관하여도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”을 “감면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

제140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.

“별 지”

［별표 1］

# 점용료 산정기준표(제3조 관련)

(금액의 단위: 원)

| 점 용 물 의 종 류 | | | 기 준 단 위 | | 점 용 료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점용단위 | 기간단위 | |
| 1.전주,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| 전주,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| | 1개 | 1년 | 850 |
| | 지중배전용기기함, 무선전화기지국,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,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, 교통량검지기, 주차측정기, 우체통, 소화전, 모래함, 제설용구함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| | | | 1,250 |
| | 공중전화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| | | | 24,100 |
| | 송전탑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| | 점용면적 1㎡ | 1년 | 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 |
| 2.수도관,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| 수도관, 배수관, 농업용수관, 전기관, 전기통신관, 가스관, 송열관, 송유관, 작업구(맨홀), 전력구, 통신구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| 지름 0.1미터 이하 | 길이 1미터 | 1년 | 200 |
| | | 지름 0.1미터 초과 0.2미터이하 | | | 400 |
| | | 지름 0.2미터 초과 0.4미터 이하 | | | 850 |
| | | 지름 0.4미터 초과 0.6미터 이하 | | | 1,250 |
| | | 지름 0.6미터 초과 0.8미터 이하 | | | 1,650 |
| | | 지름 0.8미터 초과 1.0미터 이하 | | | 2,050 |
| | | 지름 1.0미터 초과 2.0미터 이하 | | | 3,100 |
| | | 지름 2.0미터 초과 3.0미터 이하 | | | 5,200 |
| | | 지름 3.0미터 초과 | | | 7,250 |
| | 지중정착장치(어스앵커), 암거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| 지름 0.1미터 이하 | 길이 1미터 | 1년 | 300 |
| | | 지름 0.1미터 초과 0.2미터 이하 | | | 600 |
| | | 지름 0.2미터 초과 0.4미터 이하 | | | 1,250 |
| | | 지름 0.4미터 초과 0.6미터 이하 | | | 1,850 |
| | | 지름 0.6미터 초과 0.8미터 이하 | | | 2,500 |
| | | 지름 0.8미터 초과 1.0미터 이하 | | | 3,100 |
| | | 지름 1.0미터 초과 2.0미터 이하 | | | 4,600 |
| | | 지름 2.0미터 초과 3.0미터 이하 | | | 7,750 |
| | | 지름 3.0미터 초과 | | | 10,850 |
| 3.광고탑, 광고판, 간판(돌출간판을 포함한다), 사설안내표지, 현수막,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| 광고탑, 광고판, 간판(돌출간판을 제외한다) | 일시 설치한 것(1월 미만 점용) | 표시면적 1제곱미터 | 1일 | 150 |
| | | 기 타 | 표시면적 제곱미터 | 1년 | 20,700 |
| | 돌출간판 | | 표시면적 제곱미터 | 1년 | 9,900 |
| | 사설 안내 표지 | | 1개 | 1년 | 17,250 |
| | 현수막 |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| 표시면적 제곱미터 | 1일 | 50 |
| | | 기타의 용도 | | | 150 |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아치 | 도로횡단 | 표시면적 제곱미터 | 1년 | 41,400 |
| | | 기 타 | | | 20,700 |
| 4.주유소, 주차장, 여객자동차터미널, 화물터미널, 자동차리소, 승강대, 화물적치장,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| 건 축 물 | 1층인 건축물 | 점용면적 제곱미터 | 1년 | 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금액 |
| | | 2층인 건축물 | | | 토지가격에 0.055를 곱한 금액 |
| | | 3층인 건축물 | | | 토지가격에 0.06를 곱한 금액 |
| | | 4층 이상인 건축물 | | | 토지가격에 0.065를 곱한 금액 |
| | 진·출입로 | | | | 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 |
| | 기 타 | | | | 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 |
| 5.철도,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| | | 점용면적 제곱미터 | 1년 | 토지가격에 0.04를 곱한 금액 |
| 6. 지하상가, 지하실,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| 건축물 | 1층인 건축물 | 점용면적 제곱미터 | 1년 | 토지가격에 0.015를 곱한 금액 |
| | | 2층인 건축물 | | | 토지가격에 0.017를 곱한 금액 |
| | | 3층 이상인 건축물 | | | 토지가격에 0.019를 곱한 금액 |
| |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| | | | 토지가격에 0.0075를 곱한 금액 |
| | 기 타 | | | | 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 |
| 7.노점, 자동판매기,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| 버스표 판매대, 구두수선대 | | 점용면적 제곱미터 | 1년 | 토지가격에 0.01를 곱한 금액 |
| | 노점, 자동판매기, 상품진열대 | | | | 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 |
| 8.공사용 판자벽, 발판,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| 일시 점용한 것 | | 점용면적 제곱미터 | 1일 | 150 |
| | 기 타 | | | 1년 | 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 |
| 9.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, 점포, 창고, 자동차주차장, 광장, 공원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| | | 점용면적 제곱미터 | 1년 | 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 |
| 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, 물건 및 시설 | 농업 및 식물재배 | | 점용면적 제곱미터 | 1년 | 토지가격에 0.01를 곱한 금액 |
| | 주 택 | | | | 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 |
| | 기 타 | | | | 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 |

〈비 고〉

1.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.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.
2.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,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
3. 광고탑,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.
4.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,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.
5.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,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,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.
6.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, 하수도관, 전기관, 전기통신관, 가스관, 송유관, 송열관에는 작업구(맨홀), 전력구, 통신구 등이 포함된다.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.
7. 위 표 제6호의 경우로써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.
8.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(이하 “점용료”라 한다)·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시행에 필요한----------<br>---------- |
| 제2조(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)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,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. | 제2조(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) ----------<br>제24조에 따라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제80조의2에 따라<br>----------. |
| 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①점용료는 “별표 1”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.<br>②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. | 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① ----<br>----별표 1에 따라----------<br>-------.<br>② ----------산정기준에 따르되----------. |
| 제4조(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)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,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br>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| 제4조(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) ① 제3조에 따른----------<br>----------5천원 미만----------<br>--------.<br>② ---제75조에 따른--------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 | ----------점용료 중----------. |
| 제5조(점용료 등의 조정)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,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“별표 2”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 | 제5조(점용료 등의 조정) ① ----------제3조에 따라----------해당연도----------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----------. |
| ②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 | ② ----------제1항----------. |
| 제6조(점용료 등의 감면)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| 제6조(점용료 등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----------.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전기공급시설, 전기통신시설, 송유관시설, | 2. ----------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가스공급시설, 열 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| ----------그 밖에 ---------- ---------- ---- |
| 3.·4. (생 략) | 3.·4. (현행과 같음) |
| 5. 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래시장이 같은 법 제6조의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비·햇빛 가리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| 5.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---------- ----------제20조의 공동시설로 비가리개시설---------- ---------- |
|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 | ②제1항에 따른---------- ------다음 각 호에 따른다. |
| 1.·2. (생 략) | 1.·2. (현행과 같음) |
| 3.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,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감면 | 3. ---------- -------그 밖에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|
|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“별표 1”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 | ③ -------제2항---------- ---------별표 1---------- ----------다음 각호에 따른다. |
| 1.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안으로 한다. | 1. ----------건설표준품셈에 따라---------- ----------범위 안------. |
| 2.·3. (생 략) | 2.·3. (현행과 같음) |
| ④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| ④ ----------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----- ------.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7조(점용료 등의 부과·징수) ①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의 부과·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(별표서식)를 발부하여야 한다.<br>②점용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·징수한다.<br>1. (생 략)<br>2.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, 당해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년도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·징수한다.<br>3.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·징수하되,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·징수한다.<br>③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. | 제7조(점용료 등의 부과·징수) ①--제43조제1항에 따라--------별지 서식의 납입고지서-------.<br>②-------다음 각 호에 따라----------.<br>1. (현행과 같음)<br>2. ----------3개월 이내--------.<br>3. ----------1개월 이내----------.<br>③ ----------그 밖에----------각 호에도----------. |
| 제8조(점용료 등의 강제징수) 점용료 등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. | 제8조(점용료 등의 강제징수) ----------강제징수는----------예에 따른다.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9조(수수료의 징수) ①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br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도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 | 제9조(수수료의 징수) ① --제77조의2에 따라----------.<br>② 제1항에 따른----------감면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-----. |
| 제10조(징수의 위임)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는 「부천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의한다. | 제10조(징수의 위임) ----------따른다. |
| 제11조(이의신청) 점용료·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| 제11조(이의신청)----------「지방자치법」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----------. |